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96
----------	------

2020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2020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음.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임기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어 기후환경본부 특성에 따른 계속사업의 추진 및 위원 위촉시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횟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20.7.30~2020.8.19.) 결과: 의견 없음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1회 연임이 가능한 위촉위원의 임기를 6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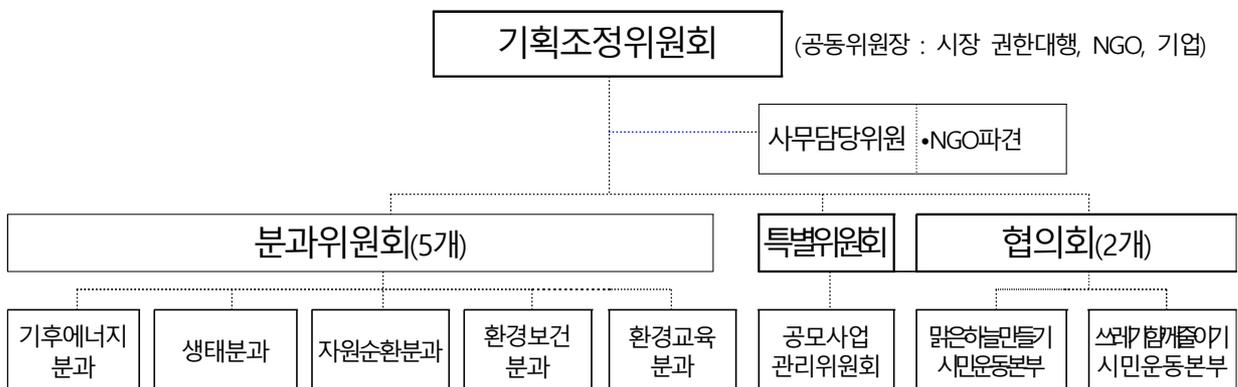
### 나. 검토의견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지구환경 보전을 목표로, 서울시민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여 협치 체계 마련과 정책 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1995년에 최초로 설치되었음.

동 위원회는 현재 3인의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기획조정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1개 특별위원회 및 2개 협의회에 당연직 6인과 위촉직 94인 등 총 10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조직도 및 위원 구성 현황>

- ▶ 위촉직: 시의원(5), 시민단체(30), 지역.시민(7), 전문가(24), 기업(16), 언론.법조(7), 청년(5)
- ▶ 당연직: 시장, 기후환경본부장, 시민건강국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한강사업본부장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제8조제3항에서는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sup>1)</sup>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018년(2년, 1회 연임)<sup>2)</sup>과 2019년(2년, 2회 연임)<sup>3)</sup> 조례 개정을 통해 각각 4년과 6년으로 변경된 바 있음.

다만, 부칙에 시행일을 2018년의 경우 약 1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2019년 2월 1일부터로, 2019년의 경우 공포한 날(2019년 1월 3일)부로 규정함에 따라, 현재 2018년 조례 개정 사항이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2019년 조례 개정이 효력을 상실), 이로 인해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여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녹색위 위촉위원 임기 및 연임 관련 조례 개정 현황〉

~2018.1.4.	⇒	<b>2018. 1. 4. 개정</b> (현재 발효 중)	⇒	<b>2019. 1. 3. 개정</b> (효력 상실)
임기 2년		임기 2년, 1회 연임 (시행일: 2019년 2월 1일)		임기 2년, 2회 연임 (시행일: 공포일(2019년 1월 3일))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개정시 부칙 시행일의 오류를 바로 잡아 위촉위원의 임기를 6년(2회 연임)까지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음.

1) 동 규정은 2016년 7월 14일에 신설되었음.

2)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9. 2. 1.][서울특별시조례 제6744호, 2018. 1. 4., 일부개정]

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9. 1. 3.][서울특별시조례 제6985호, 2019. 1. 3., 일부개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한 차례”를 “두 차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생   략)</p> <p>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u>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두 차례</u>-----.  -----  -----.</p>